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27 발의연월일: 2020. 9. 14.

발 의 자:이상민·박성준·황운하

기동민 · 조승래 · 김민기

김병욱 • 한병도 • 홍영표

어기구 • 윤관석 • 강준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여야 하나,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연구개발의 도전성은 부족하였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이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연구개발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으로 연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의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목표를 공모하여 연구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⑤ 정부는 중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

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 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
	<u>할 수 있다.</u>

<u>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u>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는 중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